

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

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발전목표관리실

1.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

목표관리제의 운영체계

목표관리제 운영체계

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제도 총괄, 조정 기능을 하는 총괄기관과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역할을 구분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(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)

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·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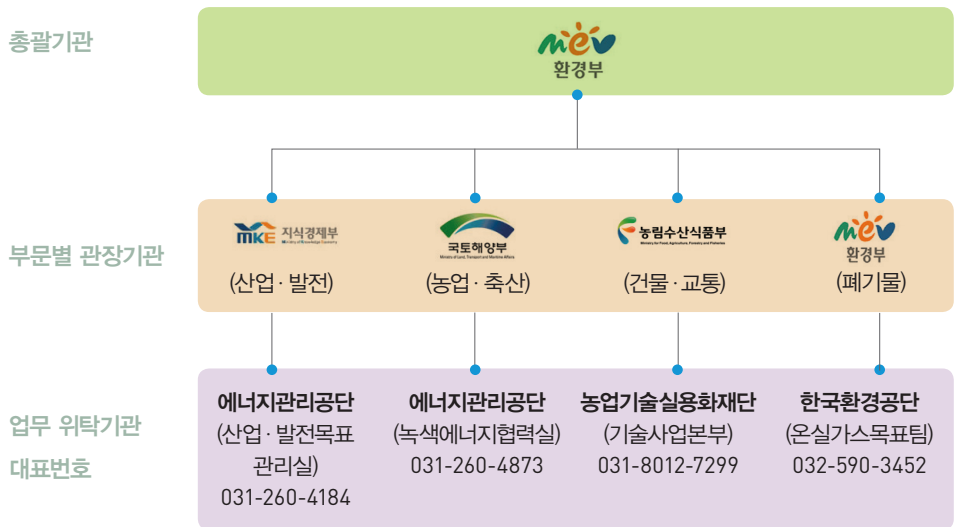
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·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1. 농림수산식품부 : 농업·축산 분야
2. 지식경제부 : 산업·발전(發電) 분야
3. 환경부 : 폐기물 분야
4. 국토해양부 : 건물·교통 분야

총괄기관(환경부) 종합지침 마련, 관장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점검·평가 담당

부문별 관장기관(지식경제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)

관리업체 지정, 목표설정, 이행 관리, 실적 평가 및 관련 행정처분을 담당



2. 관리업체 지정

관리업체 지정

규정	내용		일정
제17조	관리업체 선정 및 목록통보 (전자적방식)	(관장→총괄)	매년 4.30까지
제18조①	관리업체 증복, 누락 및 적절성 확인 통보	(총괄→관장)	매년 5.31까지
제20조①③	부문별 관리업체 지정 고시 (관보 게재)	(관장)	매년 6.30까지
제21조①	지정에 대한 이의신청	(업체→관장)	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
제22조①	이의신청 재심사 및 확인 요청	(관장→총괄)	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7일 이내
제22조④	재심사 결과 확인 및 결과 통보	(총괄→관장)	확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
제22조⑦	재심사 결과 통보	(관장→업체)	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제20조⑤ 제22조⑧	관리업체 지정 변경 고시	(관보 게재) (관장)	고시내용 변경 및 재심사 결과 변경시 즉시 고시

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
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계실(031-260-4596)

관리업체 지정 확인

- 개별업체 서면 통보(고시당일 발송)
- 지식경제부(<http://www.mke.go.kr>) → 상단'법령' → '고시/공고' → 고시에서'목표관리' 검색
- 전자관보(<http://gwanbo.go.kr>) → 고시 → '목표관리'검색

관리업체 지정 • 업체(법인기준)와 업체 내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이상인 경우

〈관리업체 지정기준〉

구분	2011. 12. 31 까지		2012. 1. 1 부터		2014. 1. 1부터	
	업체 기준	사업장 기준	업체 기준	사업장 기준	업체 기준	사업장 기준
온실가스(CO ₂)	125,000	25,000	87,500	20,000	50,000	15,000
에너지(TJ)	500	100	350	90	200	80

★1TJ = 23.8846toe

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

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~제22조

문의처 및 이의신청서 제출처

- 문의 :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계실(031-260-4596)
- 제출 : (448-994)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계실
(우편접수만 가능)

이의신청 결과확인

- 개별업체 서면 통보(고시당일 발송)
- 지식경제부(<http://www.mke.go.kr>) → 상단'법령' → '고시/공고' → 고시에서'목표관리' 검색
- 전자관보(<http://gwanbo.go.kr>) → 고시 → '목표관리'검색

이의신청 • 오지정 또는 고시된 업종, 상호명, 소재지 등이 실제 업체의 현황과 상이한 경우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

- 소명자료는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

유의사항 • 이의신청 기한이 초과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므로 일정 준수 필요 (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)

-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, 공적 소명자료 이외에 회사 내부 자료(수기 데이터 등) 및 가공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인 재심사가 불가하므로 이의신청 사유에 적합한 공적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제출

3. 명세서

규정	내용	일정
제52조①	명세서 작성 및 검증기관 검증	(업체) 차년도 3.31까지
제52조①	명세서 제출 (전자적방식)	(업체→관장) 차년도 3.31까지
제91조①	명세서 비공개 요청 (전자적방식)	(업체→관장) 차년도 3.31까지
제91조④	명세서 공개여부 심사	(센터) 차년도 4.30까지
제91조⑤	명세서 비공개 심사결과 통보(서면통지)	(센터→업체, 관장) 차년도 5.15까지
제70조②	명세서 시정요구(관장) 및 제출(업체)	(관장→업체→관장) 센터에 명세서 제출전까지
제70조	명세서 확인후 제출 (전자적방식)	(관장→센터) 명세서 제출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
제91조⑥	명세서 주요정보 공개 (전자적방식)	(센터, 관장) 차년도 6.30까지
법제64조① (별표7)	과태료 부과	(관장→업체) - 명세서 미보고, 거짓보고 - 시정이나 보완명령 불이행

명세서 작성 및 제출

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2조

문의처 • 제출시스템 문의 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(1577-8065)

- 명세서 내용 문의 : 에너지관리공단 산업·발전목표관리실(031-260-4193)
- 검증기관 문의 :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(032-560-7327)

명세서 작성방법 • 환경부에서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」 배포

★명세서 작성 매뉴얼 : 환경부 디지털도서관(<http://library.me.go.kr>) → 메인화면 → '명세서작성해설서'검색

★전산시스템 매뉴얼 :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→ 메인화면 자료실 → '관리업체 명세서 입력방법 매뉴얼'

명세서 제출 •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의 별지 8호 서식을 참고하여 국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mke.gir.go.kr>)에 입력

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

- 명세서는 반드시 총괄기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 완료후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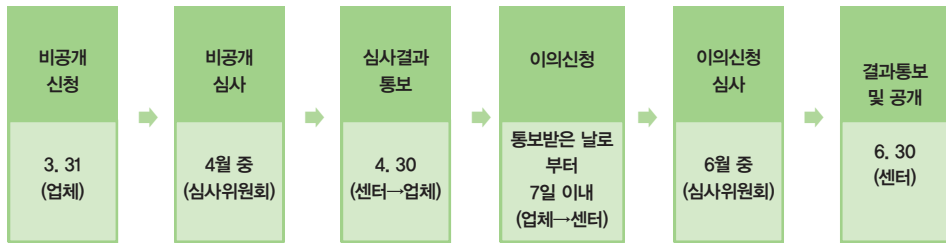
- 제출기한인 3월 31일 즈음에는 사용자가 많이 몰려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, 명세서 입력 및 제출을 못하는 사례가 많음
- 검증이 완료되면 '시정조치완료'와, '제출'을 클릭해야 명세서 제출이 완료되며, 이 작업은 명세서 작성 연도별로 각각 클릭해야함

명세서 검증기관 확인 • 총괄기관(환경부)에서 지정한 검증기관만 수행가능

★ 검증기관 지정현황 : 국립환경과학원(<http://www.nier.go.kr>)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→ 정보마당 → 측정분석기관 지정현황

명세서 비공개

- 추진일정** • 명세서 비공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명세서 제출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
- 명세서 비공개 심사 절차



★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있는 사무국에서 운영

근거 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1조

문의처 및 제출처

- 문의 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(02-6943-1303)
- 비공개 신청 :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mke.gir.go.kr>)에서 검증을 마친 명세서를 제출 → 명세서 비공개 신청 화면 → 신청 항목 선택 → 신청 사유 작성 → 저장(전자적 방식만 가능)
- ★ 비공개 신청 사유 작성시에 합리적인 사유 기재 및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요망
- 이의신청서 제출 : (110-999)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5층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우편접수만 가능)

★ 비공개 이의신청 제출 서류 : 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배포하는 이의신청서, ② 이의신청 내용 증빙자료

비공개 심사기준

심사기준	상세내용
권리	해당 정보가 비공개 신청자의 재산권 등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체
영업 비밀	비공시성 및 비밀관리 :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(비공시성),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(비밀관리성)
	경제성 및 유용성 : 독립된 경제적 가치(경제성)를 가지고, 생산방법·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(유용성)

명세서 주요정보 공개일 및 공개처

- 시기 : 매년 6월 30일
- 공개 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gir.go.kr>) → 온실가스통계 → 명세서 주요정보

공개대상 주요정보

- ①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
- ② 관리업체의 규모(매출액, 종업원수)
- ③ 업체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과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 및 사용량
- ④ 온실가스 감축·흡수·제거실적
- ⑤ 상호 및 업종
- ⑥ 관리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
- ⑦ 검증수행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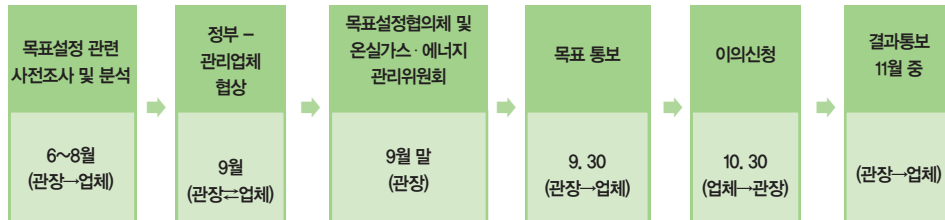
★비공개 신청 가능 주요정보 : ① ~ ④

4. 목표설정

규정	내용	일정
제30조⑥ 제31조⑥	관리업체별 목표 설정 (관장)	당해년도 9.30까지 (최초 지정시 차년도에 목표설정)
제30조⑥ 제31조⑥	목표설정 결과 통보(업체) 및 제출(센터, 전자적방식) (관장-업체, 센터)	당해년도 9.30까지 (최초 지정시 차년도에 목표설정)
제35조①	목표설정 이의신청 (업체-관장)	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제35조②	목표설정 이의신청 인정여부 결정 연장 통보(14일 이내 결정 못할때) (관장-업체)	사유를 문서로 즉시 통보
제35조②	목표설정 이의신청 인정여부 결정 통보 (관장-총괄업체)	이의신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
제35조②	목표설정 이의신청 인정여부 결정 통보 (결정 연장시) (관장-총괄, 업체)	이의신청을 요청받은 날부터 21일 이내로

목표 설정

- 목표설정 절차



근거 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

문의처 및 이의신청서 제출처

- 문의 : 에너지관리공단 산업·발전목표관리실(031-260-4193)
- 제출 : (448-994)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
산업·발전목표관리실(우편접수만 가능)

목표설정 방법 • 관리업체의 목표 이행연도의 예상배출량에 업종별 감축계수를 곱한 값으로 설정

◆ '업체별'목표(배출허용량) = 목표 이행연도 예상배출량
 ((㉔ 기준시설 기준 배출량 × ㉕ 예상성장률) + ㉖ 신·증설 예상배출량) × ㉗ 업종 감축계수
 * 감축계수 = '업종별' 목표(배출허용량) / '업체별' 예상배출량 합계

- ㉔ 기준시설 기준연도 배출량은 관리업체가 최초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연도 평균 배출량(10년 최초 지정된 업체의 경우 '07~'09년 평균)이며 관리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를 분석하여 산정

- ㉑ 예상성장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별 또는 사업장별 가동률, 제품생산량 등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이행연도 예상증감률이며 정부와 업체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
- ㉒ 신·증설 예상배출량은 목표 이행연도 중에 가동 예정인 신·증설 시설의 배출량 전망치, 사업 준공내역서, 착수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 상의 설계용량, 가동일수, 평균 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.
- ㉓ 감축계수는 업종별로 주어지는 총배출허용량(정부에서 사전 결정)에 맞게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을 조정하는 계수

목표설정 이의신청

- 이의신청 :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
-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: 공문, 이의신청서, 이의신청서에 대한 증빙자료
- 결과통보 :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

5. 조기감축실적

구 정	내 용		일 정
제78조①	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 제출 (최초지정 이후)	(업체-관장)	차년도 7.31까지
제78조②	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 제출 (최초 목표설정해 추가실적 부문)	(업체-관장)	차년도 7.31까지
제79조⑤	조기감축실적 평가결과 통보	(관장-총괄)	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제80조	조기감축실적 평가결과 증복 및 적정성 통보	(총괄-관장)	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제81조	조기감축실적 평가결과 인정 결과 통보	(관장-총괄, 업체)	10.31까지
제82조②	조기감축실적 인정량 보고	(업체-관장)	차년도 3.31까지
제82조③	조기감축실적 인정량 확인결과 통보	(관장-총괄)	차년도 4.10까지
제82조③	관리업체별 조기행동 기여계수 산정-통보	(총괄-관장)	차년도 4.20까지
제82조④	당해 관리업체의 연간 신청가능량 산정-통보	(관장-업체)	차년도 4.30까지
제84조	조기감축실적 정보 공개	(센터)	일정미정

조기감축실적 인정

근거 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8조

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 시기

- '05년 1월 1일 ~ 관리업체가 최초로 목표를 설정하는 해 12월 31일
- 최초로 목표를 설정한 해에 연간 기준으로 추가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

조기감축실적 인정 가능 대상사업

- 지식경제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,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
- 국토해양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
-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
- 기타 자발적 감축사업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인정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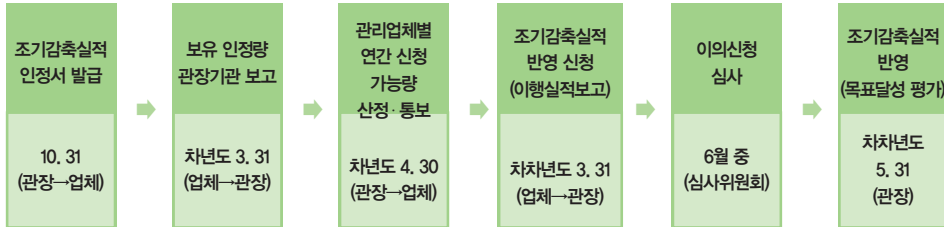
문의처 • 문의 : 에너지관리공단 산업·발전목표관리실(031-260-4199)

- 제출 : (448-994)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
산업·발전목표관리실(우편접수만 가능)

- 제출서류**
-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(목표관리 운영지침 별지 14호)
 - 검증결과보고서
 - 사업 주관 부처의 인증서류
 - 추가성에 대한 자체 확인·평가서

조기감축실적의 반영

- 추진절차



- 근거 :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~83조
- 관리업체의 연간 신청가능량 : 다음의 값 중 적은 것으로 함
 1.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% (연간 인정총량)에 개별 관리업체의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
 2. 관리업체의 연간 배출허용량의 10%

6. 이행계획·실적보고

이행계획서 제출

규정	내용	일정
제37조①	이행계획서 제출 (전자적방식)	(업체→관장) 당해년도 12.31까지 (최초 지정시 차년도 목표설정하는 해에 제출)
제37조④	이행계획서 확인 및 제출	(관장→센터) 차년도 1.31까지
제37조④	이행계획 수정 요청	(관장→업체) 부실하게 작성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청
제37조④	이행계획 수정내역 제출	(관장→센터) 시정된 이행계획을 받는 즉시 제출

이행실적 보고서 제출

규정	내용	일정
제67조①	이행실적 제출 (전자적방식)	(업체→관장) 차차년도 3.31까지 (목표이행 다음 해)
제69조③	이행실적 확인 후 제출 (전자적방식)	(관장→센터) 이행실적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제71조①	개선명령	(관장→업체) 이행실적 제출 후
제71조②	개선계획을 반영하여 이행계획 제출	(업체→관장) 차차년도 12.31까지 (다음연도 이행계획서 제출시)
법제64조① (별표7)	과태료 부과	(관장→업체) - 개선이행 결과 미보고, 거짓보고 - 개선이행 결과 미공개

이행계획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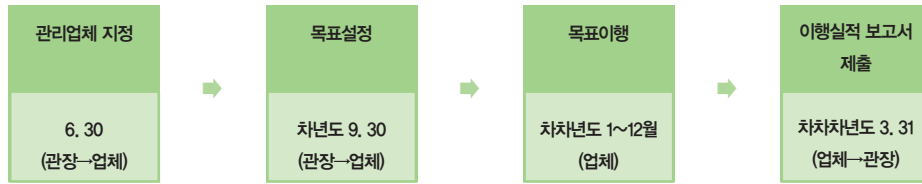
- 근거** 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

- 문의처** • 제출시스템 문의 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(1577-8065)
 • 이행계획서 내용 문의 : 에너지관리공단 산업·발전목표관리실(031-260-4193)

이행계획서 제출 •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의 별지 7호 서식을 참고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mke.gir.go.kr>)에 입력

이행실적 보고서 제출

- 추진일정** • 목표이행 다음 연도 3월 31일
 •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절차



근거 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

- 문의처** • 제출시스템 문의 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(1577-8065)
 • 보고서 내용 문의 : 에너지관리공단 산업·발전목표관리실(031-260-4193)

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•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의 별지 13호 서식을 참고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mke.gir.go.kr>)에 입력

7. 과태료

근거 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44조

- 문의처 및 의견제출서 제출처** • 문의: 지식경제부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팀(02-2110-4877)
 • 제출: (427-700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팀
 (우편접수만 가능)

과태료 부과 기준

위반행위	위반행위 횟수·기간	과태료 금액
• 법 제42조 제6항(이행실적 보고서 제출)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	300만원
• 법 제42조 제9항(개선명령을 반영한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)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1개월~3개월 기간 경과	500만원
	3개월 초과 기간 경과	700만원
• 법 제44조 제1항(명세서 제출)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1,000만원
• 법 제42조 제8항(목표달성 미달)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• 법 제44조 제2항(명세서 제출)에 따른 시장·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1차 위반	300만원
	2차 위반	600만원
	3차 이상 위반	1,000만원
• 법 제42조 제9항(개선명령의 이행 결과)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		1,000만원

- ★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
 ★ 관련 내용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7 참고